

1. 제정이유

지역완결적인 필수의료로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「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」이 제정(법률 제21439호, 2026. 3. 10. 공포)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필수의료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(안 제2조)

필수의료종합계획 수립 시 필수의료 성과평가,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간 협력, 정보·통계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.

나. 필수의료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등(안 제3조)

필수의료 실태조사에 필수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, 필수의료의 질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,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함.

다. 필수의료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(안 제4조)

1) 시·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한 지침에 따라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시·도의 성과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.

2) 인접 시·도의 관할 구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마련한 경우, 해당

구역에 대하여 인접 시·도지사와 공동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.

라.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·운영 등(안 제5조)

1)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진료권 내 복수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, 진료협력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19 구급대,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을 지원기관 등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.

2) 필수의료 책임의료기관은 진료협력체계 추진 계획 수립, 참여의료기관 현황 점검 및 지원,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진료협력체계 협의체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함.

마.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(안 제6조)

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은 종합병원 중 24시간 진료체계와 필수의료 환자 이송·전원 및 협진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하도록 함.

바.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조건부 지정 등(안 제7조)

시·도지사는 일정 기한 내 요건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예산 및 행정적·기술적 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
사. 필수의료 전문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(안 제8조)

필수의료 전문센터의 지정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 중

에서 희귀·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, 고난이도 치료기술 또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진료 등이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도록 함.

아. 거점의료기관 및 전문센터의 지정 취소 등(안 제9조)

- 1)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또는 전문센터가 지정 요건을 미충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할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.
- 2)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또는 전문센터의 지정 취소 시 해당 의료기관은 거점의료기관 또는 전문센터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의 사용을 금하도록 함.

자. 필수의료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(안 제10조)

- 1) 필수의료지원센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필수의료 정책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지원, 필수의료 관련 정책·제도의 연구·조사·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.
- 2)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료권별로 지역센터를 설치·지정할 수 있도록 함.

차. 필수의료취약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(안 제11조)

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권별 수요 및 공급 현황, 필수의료 환자의 보건 의료기관 접근성, 필수의료 자체충족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하며, 지정 시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·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

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필수의료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) 「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2항제6호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(이하 “성과평가”라 한다)에 관한 사항
2.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간 협력에 관한 사항
3. 필수의료에 관한 정보·통계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등) ①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“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지역 간 필수의료의 접근성 격차, 인접 진료권 간 환자의 유출입 추

이 등 필수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

2. 필수의료의 질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필수의료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는 현지조사, 서면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되,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제4조(필수의료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성과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, 절차 등 성과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특별시장, 통합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관할 지역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

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·도의 성과평가 결과와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시·도지사는 그 평가결과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다음 연도 필수의료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인접한 시·도(특별시, 통합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대하여 인접 시·도지사와 공동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⑥ 성과평가는 자체평가, 서면평가, 대면평가, 전문가평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⑦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각각 보건복지부 및 시·도의 인터넷 홈페이지(제5항의 경우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인접 시·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) 등을 통하여 성과평가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⑧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성과평가 실시·공개 및 관련 자료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⑨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성과평가

결과를 다음 연도 재정 지원의 배분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제5조(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·운영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(이하 “진료협력체계”라 한다)를 하나의 진료권 내에서 복수로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진료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.

1. 「지역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
2.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기관
3. 그 밖에 진료협력체계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기관

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진료협력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,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 관계 기관·단체·개인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·단체 등을 진료협력체계의 지원기관 등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
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진료협력체계의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는

책임의료기관(이하 “책임의료기관”이라 한다)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
 2. 진료협력체계에 참여하는 보건의료기관(이하 “참여의료기관”이라 한다)의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추진에 대한 현황점검 및 지원
 3. 제6항에 따른 진료협력체계 협의체의 설치·운영
 4. 참여의료기관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
 5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진료협력체계 관련 업무
- ⑤ 지리적 접근성 등으로 인해 제4항의 기능을 책임의료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아니한 경우, 해당 책임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도 필수의료위원회(이하 “시·도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능의 일부를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⑥ 책임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4항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참여의료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 협의체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진료협력체계 협의체가 책임의료기관의 장이 운영 중인 다른 협의체와 그 기능이 중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체와 통합 또는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⑦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보건의료기관 간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시설·장비 및 그 밖의 보건의료자원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
 2. 필수의료 환자의 진료 현황, 이송·전원 실적 등 진료협력체계의 운영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수집·분석 및 공유에 관한 사항
 3. 그 밖에 진료협력체계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⑧ 책임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이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⑨ 책임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 계획의 시행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·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이를 제4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⑩ 참여의료기관 간에 기능 또는 역할 분담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책임의료기관은 시·도지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시·도지사는 시·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참여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⑪ 시·도지사는 제10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련 참여의료기관에게 10일 이상 기간을 두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-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협력체계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제6조(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) ① 법 제11조제1

항에 따른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(이하 “거점의료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받으려는 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일 것
2.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운영할 것
3.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을 갖추는 것
 - 가. 필수의료 환자의 이송, 전원 및 협진
 - 나. 필수의료 환자의 진료정보 공유·활용
 - 다. 그 밖에 진료협력체계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업무
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·인력 및 장비의 기준을 준수할 것

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거점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
2. 인력 운용 현황
3. 운영계획서

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·도지사는 신청 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평가한 후,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보

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평가는 서면평가, 대면평가, 현장평가,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시·도지사에게 의견을 알려야 한다.

1.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
2. 해당 진료권 내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적정성 및 전국 단위 진료협력체계와의 정합성

⑤ 시·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시·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해당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해당 거점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1. 시·도지사가 제2항의 지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
2. 해당 거점의료기관의 대상 진료권이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경우
3. 그 밖에 필수의료 공급의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지정된 거점의료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하고, 시·도지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요건, 절차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7조(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조건부 지정 등) ①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건의료기관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그 지정에 시·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제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전문에 따라 지정된 거점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후문에 따른 기한까지 제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전문에 따라 지정된 거점의료기관이 제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시설·장비의 확충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
2.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·기술적 자문 지원

④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지정의 내용 및 절차,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8조(전문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)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필수의료 전문센터(이하 “전문센터”라 한다)로 지정받으려는 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
1. 「의료법」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전문진료센터일 것

2.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것

가. 희귀·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

나. 고난이도의 치료기술 또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진료

3.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

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

② 제1항의 요건을 만족하여 전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보건의료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

2. 인력 운용 현황

3. 운영계획서

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, 지정기준에

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전문센터의 시설·장비 확충 및 운영
2. 필수의료인력의 교육·훈련
3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전문센터 지정의 기준, 절차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9조(거점의료기관 및 전문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 등)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거점의료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가. 제6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 - 나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
 - 다. 제6조제3항에 따른 평가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
라. 진료협력체계에서의 역할 수행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마. 그 밖에 거점의료기관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

2. 전문센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가. 제8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
나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

다. 제8조제3항에 따른 평가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
라. 진료협력체계에서의 역할 수행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마. 그 밖에 전문센터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

② 책임의료기관의 장은 진료협력체계에 참여하는 거점의료기관 또는 전문센터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(이하 “지정권자”라 한다)에게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검토 결과를 해당 책임의료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

당 거점의료기관의 장 또는 전문센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거점의료기관 또는 전문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, 해당 보건의료기관은 거점의료기관 또는 전문센터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해서는 안 된다.

제10조(필수의료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“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관한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1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필수의료 정책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지원
2. 필수의료 관련 정책·제도의 연구·조사·기획
3. 「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성과평가에 관한 업무
4.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담당 조직의 설치·운영 지원 및 그 운영 성과에 대한 분석·평가
5. 실태조사, 성과평가 등 필수의료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
6.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필수의료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

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료권별로 지역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수의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역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③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(이하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수탁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제3항의 운영계획에 따른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수탁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원센터의 장을 선임하여야 한다.

⑥ 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.

⑦ 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참여의료기관 및 관련 법인·단체·기관 등에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1조(필수의료취약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)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

른 필수의료취약지는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다.

1. 진료권별 필수의료 수요 및 공급 현황
2. 진료권별 필수의료 환자의 보건의료기관 접근성
3. 진료권별 필수의료 이용 현황 및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필수의료 자체충족률
4. 필수의료와 관련된 건강성과
5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계 시·도지사에게 이를 알려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, 관계 시·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필수의료취약지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,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시설·장비·인력 요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, 규모,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시·도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

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4항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원과 연계하여 실

시할 수 있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수의료취약지 지정 및 지원의 세부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제12조(규제의 재검토)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제6조에 따른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
2. 제8조에 따른 전문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
3. 제9조에 따른 거점의료기관 및 전문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 및 절차

부 칙

이 규칙은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:	2개월
보건 의료기관	명 칭	의료기관 종류	요양기관 번호
	주 소	전화번호	
	대표자 성명	면허번호	
	개설 전문과목	허가 병상 수	
신청인	신청인(개설자) 성명	면허번호	
	전문과목	전자우편 주소	
	실무자 성명	전화번호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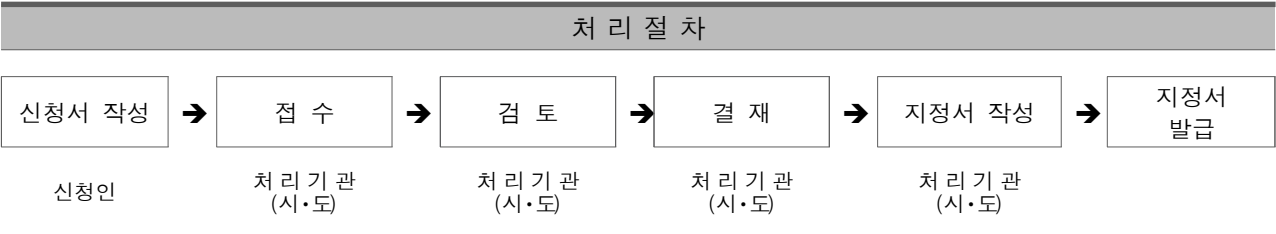
「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1. 「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. 인력 운용 현황 3. 운영계획서	수수료 없 음
------	---	------------

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필수의료 전문센터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:	2개월
보건 의료기관	명 칭		의료기관 종류	요양기관 번호	
	주 소			전화번호	
	대표자 성명			면허번호	
	개설 전문과목			허가 병상 수	
신청인	신청인(센터장) 성명			면허번호	
	전문과목			전자우편 주소	
	실무자 성명			전화번호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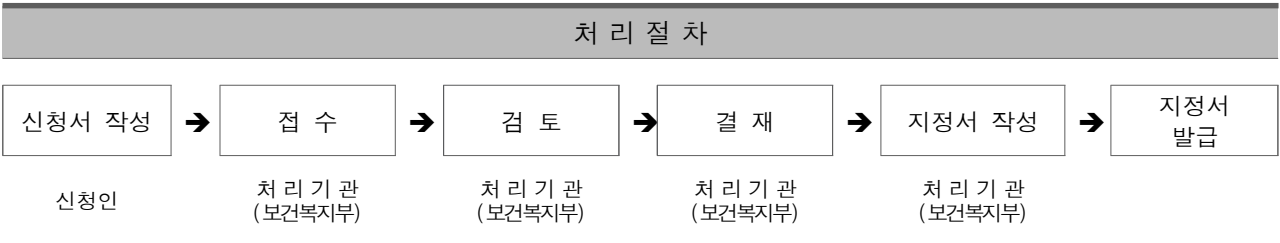
「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필수의료 전문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보건복지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「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. 인력 운용 현황 3. 운영계획서	수수료 없 음
------	---	------------

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(재활용품)]